

갑오~광무 개혁기 감옥의 변화와 인권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원재연*

논문접수일: 2019. 11. 7. 심사개시일: 2019. 11. 12. 게재확정일: 2019. 11. 21.

목 차

- | | |
|----------------------------|-----------------------------|
| 1. 머리말 | 1) 읍사례를 통해 본 감옥시설과
관리 실태 |
| 2. 감옥제도의 근대적 변화와 실행과정 | 2) 수감자 관리의 어려움과 잦은 석방 |
| 1) 신규 법제상의 감옥 관련 조항의
변화 | 4. 맺음말 |
| 2) 근대적 법령의 실행 과정 | 참고문헌 |
| 3. 감옥 시설의 정비와 관리 감독의 강화 | <Abstract>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사회의 중세적 감옥행정과 죄수에 대한 처우가 갑오~광무개혁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 법제적 변화를 신구법전의 고찰을 통해서 파악하고, 실행의 사례를 전북지역의 재판기록과 읍사례, 고지도 등의 자료를 통해서 고찰해본 글이다. 한국 근대 감옥제도의 변화는 개화파의 순수한 개혁의지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 의도가 혼재된 상황에서,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도입한 서구의 감옥제도와 그 대체적 특징을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형벌제도가 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징역형(懲役刑)의 실시는 기결감(既決監)과 미결감(未決監)의 구분을 수반했고, 징역죄수에 대한 일정한 비용 지급과 운동, 교양 및 수신, 직업 서적의 독서를 통한 자기개발의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훈육에 중점을 둔 근대적 형벌 및 감옥제도의

* 인천학연구원, E-mail: wjyhs2@hanmail.net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형의 방식에서 참수형(斬首刑)과 능지형(凌遲刑)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민간인에게는 교수형(絞首刑), 군인에게는 총살형(銃殺刑)만 실시되었는데 이 또한 인권개선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부의 잦은 훈령과 지령을 통해서 신법령에 따른 재판의 모든 과정이 계도되었고, 구습에 따른 막연한 판결이 아닌 분명한 근거에 따른 객관적 판결을 지향했다. 또 새로운 법령에 따라 수인에게 형구(刑具)를 착용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했고, 판결 연기에 따른 체옥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방(保放), 석방(釋放), 감형(減刑) 등 각종 사면령의 혜택도 여러 차례 내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갑오~광무개혁기 전북 지역 수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감옥 시설의 개선을 통한 수감생활의 향상이나, 충분한 식량의 공급과 징역에 따른 노임의 제공 등은 전북의 경우에도 다른 지방의 감옥들과 마찬가지로 불충분하고 부족한 상태였다. 이는 곧 감옥 시설의 근대화와 제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1890년대 한국사회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감옥제도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과도적 모습의 하나로 해석된다.

주제어 : 감옥(監獄), 징역형(懲役刑), 시설의 근대화, 제정의 확보, 수인(囚人)의 인권(人權)

1. 머리말

18세기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조선 사회의 감옥 관련 전문 연구는 10여 편 내외로 희소한 편이며, 제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제도와 실상의 괴리를 사실적으로 고찰한 연구업적은 매우 희소한 편이다.¹⁾

- 1) 본고가 다루는 시기 및 주제와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행 업적으로, 필자가 구독하여 참고할 수 있었던 글은 다음과 같은 3권의 개설서적 성격을 띤 단행본이었다. 법무부 편, 『韓國矯正史』(1987) 제4편 조선후기의 근대적 행형(갑오경장~광무년간) pp.197-250 ; 權仁鎬 지, 『行刑史』(국민서관, 1973) 제3편 『韓國行刑史』 중 제3장 『李朝時代』 제6-7절에서 囚禁, 監獄官制, 拘禁施設, 行刑法規 등(pp.388-414) ; 徐壹教 지,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박영사, 1974), 조선왕조 末期의 法典(pp.68-77), 刑法(pp.254-262), 囚禁(pp.334-344), 刑事節次法(pp.433-438) 등. 이 외에 본격적인 연구논문 또는 논문집 형태의 글로서 직접, 간접으로 참고한 것은 沈載祐, 『審理錄 研究』(서울대 박사논문, 2005.8) 및 이를 다소 보완 수정한 동일인의 두 책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계-심리록 연구-』(태학사, 2009),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네 죄를 고하여라-』(산처럼, 2011) ; 심재우, 『朝鮮後期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運營』 『규장각』 21(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 趙志晚, 『朝鮮時代 刑事法으로서의 大明律과 國典』(2006.8, 서울대) 및 한국법제연구원 편, 『大典會通 研究-刑典, 公典編-』(1996.11) 등 두 편의 전문서적은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설을 해주는 좋은 참고서로 필자의 본고에도 참고한 바가 크다. ; 본고의 취급 시기와 일치하면서도 본고의 주제인 감옥을 포함하여

개항기 근대 내지 대한제국기의 감옥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본격적인 연구 논문들이 나왔다. 김성우는 사형장과 사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면서 동시에 개항 전후기까지 감옥의 운영구조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고찰하였다.²⁾ 그는 다산 정약용, 펠릭스 리델 주교 등의 감옥 체험을 바탕으로 감옥은 형 집행 이전까지 범법자들을 구속하는 임시적 구금시설에 불과하지만, 그속에서 비위생, 기근과 갈증, 불법적 고문과 집단 따돌림의 만연 등으로 인해서 ‘이승의 지옥’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은 감옥의 실제적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데 치우쳐, 관련 법전(法典)의 고찰이 전무하고 꾸준히 변화하는 감옥제도의 모습이나 감옥제도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의 흠민 의식(恤民意識) 등을 고찰하지 못했다. 시기적으로도 감오~광무개혁기에 이르는 개항기 근대를 다루지 못한 한계성을 지닌다.

홍문기의 연구성과는 지금까지 나온 개항기 근대의 한국 감옥제도의 실상과 변화하는 과정을 가장 입체감 있게 사실적으로 잘 서술해주고 있다.³⁾ 특히 이 논문은 갑오개혁부터 광무연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감옥제도의 근대적 변화가 사실상 1880년대 조사시찰단 및 갑신개화파의 개혁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동시에 갑오개혁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조선 침략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1880년대 일본의 서구식 감옥제도 개혁안을 1890년대

형사제도 일반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都冕會,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의 研究』(서울대 박사논문, 1998.2) 및 같은 이의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 제정과정』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편, 2003.12, 정궁식,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등이 있으며, 본고의 상당한 내용은 이 양자의 논문과 개설서를 많이 참고하였다. 이밖에 본고의 시기 및 주제와 관련이 되는 논문으로 문준영, 『大韓帝國期 刑法大典의 制定과 改正』 『법사학연구』 제20호(한국법사학회, 1999) 및 정진숙, 『1896~1905년 형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刑法大典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55(서울대 국사학과, 2009.6) 등이 있다. 한편 본고의 작성에 간접적 도움이 된 조선후기(개항전)와 일제강점기의 감옥관련 전문 연구논저로서, 임재표, 『조선시대 인본주의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단국대 박사논문, 2001) 및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메카니즘 연구-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연세대 박사논문, 1998) 등이 있다. 이밖에도 근대 감옥의 성격규정과 법제사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박영사, 2006),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의 공주감옥에 대한 실증적인 2편의 연구논저, 윤용혁,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 『웅진문화』(공주향토문화연구회, 1991.6) 및 윤용혁, 『한말의 공주옥에 대하여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에 대한 추고-』(웅진문화5, 1992) 등을 참고했다.

2)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1호(역사문화학회, 2016.5)

3) 홍문기, 『1894년 ‘감옥규칙(監獄規則)’의 성립과 근대 감옥제도의 도입 양상』 『한국사연구』 185집(2019.6, 한국사연구회)

조선 감옥이 매우 흡사하게 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면서 감옥제도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앙의 제도변화에 비해 지방의 현실적 운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정의 부족이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식비 예산의 부족, 취약한 감옥시설 등을 그 예로 들면서 빈번한 탈옥사건과 잦은 대사면령에 의한 감옥의 소결(疏決)의 배경을 함께 고찰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지방에서의 감옥제도의 변화 양상 및 감옥 운영의 실상에 대한 고찰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었고, 김성우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법전의 감옥제도 관련 조항의 고찰은 생략했다. 따라서 필자가 관심을 둔 갑오~광무개혁기 지방감옥의 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에는 원론적인 도움을 줄 뿐, 구체적인 자료나 방법론의 제시 등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2006년 법사학연구에 발표한 ‘보방(保放)’ 제도 실태에 대한 소고를 비롯하여, 광주, 수원 등 경기도에 위치한 유수부(留守府)의 형옥(刑獄) 및 천주교인의 구금(拘禁)과 관련해서 각 1편의 논고를 제출했다. 또 근대이행기 한국법제사 연구와 관련된 연구사를 정리하기도 했다.⁴⁾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르러 1890년대 호남 지역과 관련된 감옥 관련 논문들을 서술하였고⁵⁾, 유교이념에 입각한 형사 재판상의 특징을 위법률의 적용과 향촌공동체와 가족구성원 내 공정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기도 했다.⁶⁾

본고는 이상에서 언급한 학계의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부기안』, 『사법품보』, 『전라도읍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갑오~광무개혁기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지방재판소의 사례보고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본다. 이를 토대로 근대적 형사재판 제도로의 변화에 수반되는 감옥의 변화 및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전라북도 전주 감영과 그 소속 고을 등 전라북도 지역의 감옥 실상과 변화하는 모습 등을 인권신장(人權伸張)⁷⁾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원재연, 「조선시대 保放의 典據와 그 實態」 『법사학연구』 제33호(2006.4) *이하 동일인의 논저임 ; 「남한산성의 형옥과 천주교 신자들의 옥살이」 『교회사학』 창간호(2004.12. 수원교회사연구소) ; 「수원 화성의 천주교사적지 재조명 -형옥(刑獄)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제7호(수원문화원부설 수원학연구소, 2010.12) ; 「서양법의 등장과 구한말 유가 법사상의 변용」 『韓國儒學思想大系』 VIII 法思想編(한국국학진흥원, 2008.12)

5) 원재연, 「1890년대 호남지역 감옥의 운영실태 일단 - 장성군 수인(囚人) 사망사례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74호(2015.9, 조선시대사학회) ; 원재연, 「1890년대 후반 지방감옥의 관리 실태 : 전주와 인천 감옥의 체옥개선(滯獄改善)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8권 2호(아시아학술문화원, 2017.4)

6) 원재연, 「1890년대 후반 유교이념과 위법률(威逼律) : 전북지역의 판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7권 6호(아시아문화학술원, 2016.12)

7) 본고에서 논하는 ‘인권(人權)’은 현행 헌법의 인권 규정에 의하면, ‘신체의 자유’에 속하

2. 감옥제도의 근대적 변화와 실행과정

1) 신구 법제상의 감옥 관련 조항의 변화

갑오~광무개혁기에 조선사회에서 실제로 활용된 법전은 왕조의 전통적인 법전으로서 『대명률』과 國典이었던 『대전회통』 등이었다. 물론 이들 법전만으로는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조선사회의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법령들이 반포되어 재판에 활용되었다. 『대명률』과 國典을 통해 전통을 계승하면서, 서세동점(西勢東漸)과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시대사조를 선택적으로 수용, 비판하는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법령들의 경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수에 대한 적극적 차원에서의 권리 보호적 성격을 띠는 새로운 내용의 조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1) 대명률(大明律)과 국전(國典)의 관련조항

①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대략 20여 개 조항에 감옥과 관련된 내용이 산재한다. 그 내용들은 첫째, 죄수에 대한 감시 철저 및 이탈 방지와 관련된 조항들, 둘째, 죄수 또는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물론 엄밀하게 살펴볼 때 이 양자의 성격이 약간씩 혼재하는 경우도 있으니 <겹수>, <수응금이불금> 등은 죄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에 속하는 규정인 반면, 동시에 죄수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금지하는 인권 규정이기도 하다.⁸⁾

는 적법절차와 영장제도 보장,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재판제도와 관련된 시민적 권리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권을 제1, 2, 3세대로 구분한 연구에 의하면, 본고가 논하는 인권은 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자유권적 인권으로 제1세대 인권에 속한다. 동시에 근로권, 생존권,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논하는 제2세대 인권의 개념도 일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란, 『열린 법 이야기』(풀빛, 2019) 참고.

8) 죄수에 대한 감시 철저 및 이탈 방지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겹수(劫囚)>(죄수를 검탈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수응금이불금(囚應禁而不禁)>(옥구를 채우지 않거나 탈옥했을 때의 규정) 등이 있다.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는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자행하기 쉬운 옥리들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죄수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의복을 지급하고 치료를 해주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고금지감평인(故禁故勘平人)>(고의로 무죄한 이를 감금하거나 고문한 경우에 대한 처벌), <엄금(淹禁)>(기한을 넘겨 오랫동안 감옥 안에 가두어두는 것을 금함), <능학죄수(陵虐罪囚)>(죄수를 능멸하고 학대, 약탈하는 등에 대한 처벌) 등이다.

② 국전(國典)의 감옥 관련 규정들

조선왕조가 자체적으로 편찬한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일컫는 국전(國典) 조항들은 『예전(禮典)』에 속하는 <혜휼(惠恤)> 조항을 제외하면 모두 『형전(刑典)』에 속한다.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 국전의 내용 중에서 감옥과 관련된 부분을 앞서 살펴본 대명률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죄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과 감옥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것에 대한 규정이 있다.⁹⁾ 둘째로 국전에도 죄수를 비롯한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 『대전회통』 『형전』에는 <결옥일한(決獄日限)>, <휼수(恤囚)>, <사령(赦令)> 등이, 『예전(禮典)』에는 <혜휼(惠恤)> 조항이 있다. 『육전조례』에도 『형조』, 『의금부』, 『전옥서』 등의 편에 인권 관련 조항들이 들어있다.¹⁰⁾ 한편 국전의 경우에는 『대명률』에는 나오지 않는 감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등 비용 규정이 나와 있다. 『육전조례(六典條例)』 『전옥서(典獄署)』 <용하(用下)> 조에는 감옥 운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 및 관리와 각급 하에 등의 급료와 관련된 조항들이 나온다.¹¹⁾

이상에서 설명한 국전의 규정들을 『대명률』 규정과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죄수에 대한 감시 철저 및 이탈 방지감옥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조직(인원), 수감자 점호, 옥구의 종류와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이 거의 전부이다. 이는 『대명률』에 비해 죄수의 이탈을 방지하는 각종 규정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수감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대명률』에 비해 월등히 내용이 풍부하고 자세하다. 셋째로 국전에는 『대명률』에 나오지 않는 감옥운영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9) 우선 『대전회통』 『형전(刑典)』 <수금(囚禁)> 조에는 죄수 구금요건, 구금의 절차, 옥구(獄具, 형구), 대리수감 금지 등의 내용이 있다. 다음으로 『육전조례』에는 『형조』, 『전옥서』, 『의금부』편에서 관련조항들을 다룬다.

10) 『대전회통』 『형전』의 <결옥일한>은 피의자를 옥에 가두는 기한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최대 30일의 기한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동 <휼수>는 죄수를 구휼할 관리들의 의무, 옥사(獄舍)의 수리, 죄수에 대한 침학을 금지함, 정기적인 감옥 상황 보고, 보방(保放, 환수를 전제로 한 임시 석방), 죄수가 파옥(破獄, 옥을 부숨), 피신(避身, 도망)하는 경우와 추포(追捕, 추적하여 체포)의 임무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동 <사령(赦令)>에는 국왕의 사면령에 따라 죄수를 석방하고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쓰여 있다.

11) <용하> : 형신(刑訊, 刑問)할 때 쓰는 태(笞)와 장(杖)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쌀[米] 27석7두, 형조(刑曹)에서 근무하는 예속에게 지불하는 하래(下來) 및 대세전(袋稅錢) 173량6전, 땀나무, 기름, 채전(柴油價錢) 72량, (1년에 4번) 매삭(每朔) 마다 서리(書吏) 7인에게 지불하는 대미(大米) 1석5두, 소미(小米) 4두, 포(布) 5필, 사령(使令) 10명에게 지불하는 대미(大米) 1석, 소미(小米) 3두, 포(布) 5필, 오작(件作, 검시 전문가) 1명, 군사 10명에게 각각 포(布) 2필을 지불한다.

이 나온다. 이상의 3가지 특징은 조선왕조가 국초부터 사용해온 중국의 법전 『대명률』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편찬한 ‘국전’의 특징을 감안할 때, 조선왕조의 ‘국전’들은 죄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측면과 감옥을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조달 등에 대해 좀더 많은 실용적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갑오~광무 개혁기의 새로운 관련 법령

① 1894년 경무청(警務廳) 관제개편[*구 포도청(捕盜廳)]과 감옥사무 관장(조직, 직무분장)

1894년 7월 22일 그동안 형조 직속으로 있던 전옥서가 포도청의 후신인 경무청에 부속된다.¹²⁾ 이때 개편에 의하면, 관련 인원은 경무사(警務士) 1명, 경무관(警務官) 12명 이상, 주사(主事) 8명 이하, 감옥서장(監獄署長) 1명, 총순(總巡) 30명 이하, 감옥서기(監獄書記) 2명 이하, 간수장(看守長) 2명 이하, 간수(看守)와 압뢰(狎牢)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1894. 11. 「감옥규칙(監獄規則)」

명치(明治) 일본에서 도입된 근대 감옥의 개념에 따라 조선도 이전과는 달리 단순한 피의자(미결수) 대기소 내지 구치소의 기능에서 벗어나 수감자 또는 죄수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훈육하는 기능을 지향한 근대적 의미의 감옥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그 중요한 특징으로는 기결감(既決監, 이미 재판을 받은 죄수를 수감하는 곳)과 미결감(未決監, 피의자가 구금되어 재판을 대기하는 장소)의 구분이었다. 또 기존의 형조를 대신하는 법부의 업무를 나누어, 내부대신(內部大臣)의 감옥관할, 경무사(警務士)의 감옥관리, 재판관(裁判官) 및 검사(檢事)의 감옥 순시(巡視), 간수장(看守長)의 감방시찰(監房視察)과 물건사열(査閱), 죄수탈옥방지, 신입감자(新入監者) 명적표(名籍表) 상세히 기록, 문서보고 및 사열 등의 분담 업무가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수감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이전의 법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다수 있다.¹³⁾ 또 수감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규정과 상벌규정 등도 두고 있다.

12) 『新舊刑事法規大典』 上(제4류 舊法令甲 제2 訴訟及治獄)

13) ▶ 여성의 경우 3세까지의 유아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 ▶ 또 이전과 달리 감옥 내에서 수양관련 책들은 읽을 수 있다. ... ▶ 기결수에게는 의복을 대여하고, 미결수는 의복을 스스로 마련한다. 그러나 미결수도 침구(와구)는 대여해준다. ▶ 재감인의 식량(잡비)에 대한 구체적 비용 규정이 마련되는데, 매일 2전1푼3리이다. ▶ 징역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기결수 중에서 징역자에게는 일정한 노임을 지급한다. ...

③ 1895. 4. 29.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이전까지 실시되던 도형(徒刑)을 폐지하고, 강제 노역, 즉 징역(懲役)을 실시 하되, 남녀노소를 구분하여 적절한 노동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유행(流刑)을 역형(役刑)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징역표를 만들어 계급별로 처우를 달리 분류하고 있다. 수형자(受刑者)를 보통자, 특수기능 소지자, 노유자(老幼者), 부녀(婦女) 등 4종으로 분류하고, 다시 각 종류별로 5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형자들에게도 수형시설에 적용된 기간에 따라 그 대우를 달리하고 있는데, 고참이 될수록 옥구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보통징역표에 따를 경우 5등의 수감자는 무거운 족쇄[重鎖]를 발에 채우다가 4등급으로 되면 가벼운 족쇄[輕鎖]로 대신해주고, 3 등급이 되면 두 손에 수갑을 찻다가 2등급이 되면 한 손에만 수갑을 차고, 마지막 1등급이 되면 모든 옥구를 벗고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참은 수감자이면서 동시에 감옥의 보조 관리자의 지위를 부여 해주고 동료 수감자들을 질서에 따르도록 계도하게 된다.

④ 1898. 1. 12. 「감옥규칙(監獄規則)」 개정(칙령3호)

1894년에 정해진 21개 조항의 감옥규칙을 다시 재조정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항목의 순서나 문구의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져 20개로 되었을 뿐이다. 다만 감옥 운영에 드는 인건비를 좀더 세분화하고(제14조) 국가적 경축에 따른 징역 면제일을 규정하고 있다(제16조)는 점 등은 진일보된 면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14) 제1조, 감옥의 관할권. 제2조, 감옥을 미결감과 이결감(已決監, 기결감) 2종으로 구분. 제3조, 감옥서장의 임무 - 지휘, 시찰, 탈옥 및 죄수 학대 등의 방지. 제4조, 재판관, 검사의 감옥 순시. 제5조, 새로 입감할 때의 절차와 공범 분리. 제6조, 부녀의 유아 휴대. 제7조, 죄수의 작업. 제8조, 죄수의 체력고려. 제9조, 죄수의 건강관리. 제10조, 죄수의 교육. 제11조, 죄수의 복역. 제12조,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하여 이감할 때 재난 대피 및 경죄수 석방. 제13조, 定役에 가하는 囚人の 작업은 해당 죄수의 체력을 고려하며, 그 과정의 표준은 내부대신의 인가를 받을 것. 제14조, 定役 죄수에게 100일 경과후에 工錢을 料定 2/10 은 중죄수, 3/10은 경죄수, 5/10은 감옥비용에 각각 사용. 제15조, 징역 도수가 만기 석방할 때 工錢을 지급, 형기 내 죄수가 사망시 친속에게, 형기 내 도주시 관물하여 감옥비용에 충당. 제16조, 복역 면죄일 : 1월1일, 開國紀元節, 興慶節, 萬壽聖節, 千秋慶節, 繼天紀元節, 12월31일, 부모상 당한 자에게 3일간 출옥 허용. 제17조, 기결수의 衣類와 臥具는 貸與하고 식량은 1일 銅貨 8전씩 定給. 제18조, 미결수의 衣服은 自辦, 臥具는 대여, 중죄수나 무의탁자는 의식을 周給(재판관이 감옥서장에 통지), 감옥서장은 때때로 옥수의 정황을 査閱, 해당재판소의 지시를 받아 시행. ...

⑤ 감옥세칙(監獄細則) : 1898. 1. 19. 내부령(內部令) 제11호

앞서 나온 감옥규칙에서 없었던 감옥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수감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수감자들을 단순히 감옥 안에 가두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訓育)하고 교도(矯導)하려는 의도가 관철되어 있다.(제6, 15, 16, 21~24조) 또한 적극적으로 탈옥을 방지하려는 각종 세부 규정들도 마련되어 있다.(제11~14, 17, 20, 21~24조)¹⁵⁾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한 뒤에 감옥제도는 새롭게 편제된다.¹⁶⁾

(3) 신구 관련 법전의 비교검토

이상에서 논의한 갑오개혁 전후 감옥 관련 법전(법령)들의 내용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1> 갑오~광무개혁기에 사용된 신구 법전의 감옥 관련조항 비교 분석

	大明律	大典會通	六典條例	監獄規則	監獄細則	기타 신법령
관리조직 (조직/인원)	<故禁故勘平人> 提牢官 司獄官 司獄典		<典獄署> 提調2員(刑曹參議, 刑房承旨), 主簿1員,	內部大臣 총괄 警務使, 觀察使가 管理		『警務廳官制1895개정』: 警務使 1 / 警務官12 ↑ / 主事 8 ↓ / 總巡 30 ↓ / 監獄書記2

15) 주요 내용 ; ... 제6조, 未決囚 및 定役에 服役하지 아니하는 기결수는 매일 1시간 이내로 감방 밖에서 운동. 제7조, 재감인이 질병에 걸릴 경우 읍겨두고 救療함. 예방을 엄밀하게 하며, 전염병자는 즉시 격실에 읍기고 소독 실시, 병의 증세 및 감염 형상을 상세히 기록 소속관장에 보고. ... 제15조, 죄수에게 修身과 營業상에 필요한 것은 허용. 제16조, 기결수와 미결수를 막론하고 서적, 용지, 와구, 음식물 등의 贈送을 허용하되, 음식물의 경우 술과 담배를 금하고 감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데우거나 끓일 필요가 없는 물건을 1일 3차씩 1인 1식에 한하여 허락함. ... 제21조, 감옥서장은 재감인의 行狀을 기록하여 法部에 갖추어 보고하고 賞與를 줄 수 있다. 수감자에게는 적색포로 상의 왼쪽 어깨와 팔 사이에 붙여서 표시함. 제22조, 償表는 特赦의 은전을 신청하는 빙거로 삼을 수 있음. ... 26조, 재감인을 징계할 때 소행의 輕重을 나누어 枷나 鎖를 채우며, 그 상황을 해당 재판소에 갖추어 보고하여 해당자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함. ...

16) 융희1년(=1907) 12.13. 칙령52호 「감옥관제(監獄官制)」; 감옥이 내부대신의 관할에서 다시 법무대신(法務大臣)의 관할로 되고, 控訴院 檢事長, 典獄(9奏任), 看守長(54,奏任, 判任), 監獄醫(12,奏任,判任), 通譯專任(9判任) 등의 직위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6개 監獄과 9개 分監으로 정비되었다. 이후 융희2년(1908년) 11월 20일 법무령 제19호로 감옥은 다시 8개로 편제된다. 대한제국 말기의 감옥관제 개편과 관련된 시대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도면희, 앞의 논문(2003) 참고

	大明律	大典會通	六典條例	監獄規則	監獄細則	기타 신법령
	獄卒		參奉2員, 吏胥(書吏6人, 掌務書吏1人), 徒隸(使令10 名, 作作1名, 軍士10名, 行刑鎖匠1名)	監獄署長 看守長		↓ / 看守長 2↓ / 「1908.12칙령 제52호」 : 典獄9(奏任) / 看守長54(判) / 監獄醫12(奏判)/ 통역9(判)
주요규정	<劫囚> <見囚禁不得 告舉他事> 등 20	<決獄日限> <囚禁> <恤囚> 등 5	<審理><刑獄 > 등 16	관할권, 定役, 도서열람 등 20항목	통규, 급여, 위생, 접견, 상벌 등 5부분 27조목	懲役處斷例 保放規飭
옥구	<囚應禁而不 禁>	<囚禁>	<刑具> <開坐>			「刑具 關호는件」(1894) / 「訴訟及治獄」 1896.법부령 2호 / 「형법대전」 100조, 옥구119-121조
기록보고		<決獄日限> <囚禁> <恤囚>	<總例>	제7,9,18조 刑名簿 등	제11,19,20, 21-26조	
형벌종류	笞, 杖, 徒, 流, 死			死刑, 流刑, 役刑, 禁獄刑, 笞刑 「형법대전」 93-97조		
죄수이동	<稽留囚徒>	<推斷>	<總例>	제5, 12조	제1조 通規 제7조, 救療	
정기점호	<主守不覺失 囚>	<恤囚>	<總例> <監獄>	제4조,	제1조 通規 제7조, 救療	
衣食제공	<獄囚衣糧>	<恤囚>	<總例>	제17, 18조	제16-20조	
기타물품					제1, 5조 제16-20조	
노동(定役), 工錢지급				제13-16조	제6, 23조	「懲役處斷例」(1 895.4) 등
청소위생		<恤囚>	<獄囚>		제1조 通規 제4-5, 7조	
구급치료	<獄囚衣糧>	<恤囚>	<總例>		제7조	
면회	<獄囚衣糧>		<總例>		제11-14조	
운동					제6조	
목욕					제23조	
독서					제15조	
영아보육				제6조		

	大明律	大典會通	六典條例	監獄規則	監獄細則	기타 신법령
보방	<獄囚衣糧>	<恤囚>	<總例>	제16조		형법초안 제61-62조 등
식방			<總例>	제12조		형법초안 제63-64조 가출옥

위 도표에서 볼 때, 죄수의 탈옥을 방지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며, 식량과 의복 등을 지급하여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에 있어서는 189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조선왕조의 법전 등에 그 관련 규정들이 모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죄수의 수감생활을 단지 체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을 지급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의 투입 내지 의사의 진단 등에만 머물렀던 전통시대의 법전과는 달리, 갑오~광무개혁 이후에는 감옥규칙, 감옥세칙, 기타 형법초안 등의 근대이행기 법전을 통하여, 옥내 운동, 목욕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죄수의 수형 생활을 활기차게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서, 영아보육 등 자신의 수양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제외하고 몇몇 물건들을 감옥 내에서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훈육과 교화라는 근대 감옥의 이념이 관철되고, 복지의 측면에서도 발전적인 변화가 감지된다.¹⁷⁾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감옥제도가 이전과는 달리 징역형의 실시와 일정하게 연계되어 변화했다는 점이다. 즉 전통시대의 감옥은 엄밀하게 말해서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대기소에 불과했다. 비록 실제로는 법전의 「결옥일한」 규정인 30일을 넘어서서 몇 개월, 몇 년씩 심지어는 수십년 간의 체옥으로 인한 실질적인 감금형벌을 상당수의 죄수들[老獄]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법전상 감금형에 해당되는 규정은 없었다. 이는 감옥시설이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전통시대의 감옥 자체가 죄인이 한 달 이상 체류하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부적절한 시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한편 전통시대의 기본형벌인 5형 중에 도형(徒刑)은 일종의 강제노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1890년대에 도입된 징역형(懲役刑)과 외형상 유사점이 있었다. 그러나 도형은 감옥과 상관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 그 죄인의 거주지를 제한하면서

17)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2006, 박영사) ; 이 책(pp.4-5)에 의하면 감옥이란 용어 자체도 근대에 와서 새로 생긴 것으로 자유형(自由刑)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용시설(收容施設)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근대 이전의 옥과 달리 근대 감옥은 형기 동안 수형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등 그들의 모든 거동을 감시하고 훈육한다고 하였다.

강제노역을 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에서 노역에 대한 일정한 급부(갯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감옥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정한 갯가[工錢]까지 지급받았던 1890년대 이후의 징역형과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2) 근대적 법령의 실행 과정

일제의 간섭과 개화파의 자주적 개혁의지가 혼재된 갑오개혁부터, 1896년 7월에 설립된 독립협회가 대한제국의 자주적 근대화를 추동해가던 1898년 말까지, 한국사회에서 감옥제도를 포함한 근대적 형사재판제도가 순차적으로 발전해 갔다.¹⁸⁾

당시 법부에서 한성재판소와 각 지방재판소에 하달한 주요한 훈령(訓令) 및 지령(指令)¹⁹⁾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재판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법행정의 준수(遵守, 준법수행)를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감옥제도의 변화 및 그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다음의 3가지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로,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잘 살펴보고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사형을 포함하여, 새롭게 도입된 징역형 종신[役終身]이나, 유배종신(流配終身) 이상에 해당되는 죄수의 형벌은 반드시 법부에 보고하여, 법부의 지령을 받은 다음, 그 지령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래의 형법에 따라 유형(流刑)과 도형(徒刑) 등 각 지방 관찰사가 임의의 지역에 정배(定配)한 죄인의 경우, 그 집행을 중단하고, 즉시 그 죄를 징역형으로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역형환처(役刑換處)의 내용과 중죄인의 가족들에게 부과되던 연좌제(連坐制)를 폐지하였으니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둘째로 개혁정치의 일환으로서 또는 ‘건양(建陽)’ 및 ‘광무(光武)’ 연호(年號)의 사용을 경축하면서, 감형(減刑), 석방(釋放) 등 사면(赦免)의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 실시를 지시하여 지방재판소에서 그 실행과정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셋째로 감옥 시설의 수리와 징역죄수의 취역과 관련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와 이에 대한 법부의 답변이었다.

18) 도면희, 「사법품보를 통해본 갑오개혁 이후 사법제도의 운영」, 『역주사법품보』 권 1, pp.9-24 덕성여대 역사문화연구소(역편, 2018.3)

19) 1895년 윤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근대적 공문서 양식에 의하면, 훈령(訓令)이나 지령(指令)은 모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전달하는 지시 또는 명령에 해당하는 공문이지만,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를 훈령(訓令), 하급 기관의 질품(質稟, 질의나 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서 명령인 지령(指令)으로 나누어진다. 도면희, 앞의 글 pp.10-11

이러한 법부와 지방재판소와의 상호 소통과정은 곧 법제의 근대화에 따른 지방재판소와 감옥 운영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본고가 주된 대상으로 삼는 전라북도 지역의 재판소와 법부와의 소통과정은 형사재판, 감옥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전북지역 법제의 근대화 이행과정과 그 문제점 및 해결과정 등을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죄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철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근대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으로서 죄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새로운 법령의 준수와 이행의 강조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형사재판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당시 재판제도의 개혁을 추진해나갔던 행정주체인 법부가, 새로 제정된 법령에 따라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지방재판소들을 지도하는 일이었다. 전라감영에서는 1894년 12월 16일 고종의 지시에 입각하여 법무아문이 내린 공문에 따라서 연좌유배 죄인을 모두 석방하였다.²⁰⁾

또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총살형을 택한 군인의 예외를 제쳐둔다면 일반인들의 경우 야만적인 능지형과 참수형 대신에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교형(絞刑)으로 통일시켜 놓았고,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따랐다.²¹⁾ 사형제도는 물론이고, 새로이 제정된 ‘징역 종신형’이나, ‘유배 종신형’에 해당되는 이른바 ‘중죄수(重罪囚)’들의 판결은 지방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해당하는 형벌의 내용과 명단을 법부에 보고하여 법부에서 확인을 거친 후에 집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다. 건양 원년(=1896년) 9월 14일자로 법부대신이 당시 전라북도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인 윤창섭에게 내린 질책성(叱責性) 훈령(訓令) 「사형(死刑) 및 종신징역 범죄 불보처단(不報處斷) 및 죄인 의단(擬斷) 불유율서(不由律書)한 행위 질책건」²²⁾은 새로 개정

20) 앞의 『역주사범품보』 I, 162쪽, (No.171) <연좌유배죄인 석방에 대해 전라감영에서 보고하다.> ; 이에 의하면 남원에서 건섭의 딸 중혜, 장수에서 연응의 아들 창이, 무주에서 철구의 아들 병각, 용안(현 익산)에서 중혜의 5살 아이, 함열(현 익산)에서 중혜의 아내 조씨 등이 즉시 석방되었다.

21) 같은 책 442쪽 (No.754) <장성의 비적 한운화 등의 교형처리에 대해 전주부에서 보고하다.> ; 이에 의하면 전주부에서는 비적 6명을 능지형이나 참수형으로 처단하지 않고 새롭게 바뀐 교형으로 처형했다.

22) 앞의 『기안(起案)』 제10책 1896년 9월 14일(문서집행일) 「훈령-전북」(*서울대규장각 영인본 『법부기안1』 p.557 ; … 전(前) 전주재판소 판사 이병훈(李秉勳)의 보고서(제4호) 내에, “본부 관하 장성(長城)에서 붙잡아 압송해온 비류(匪類, 동학교도) 한운화(韓允化), 승려 응운(應雲)과 진위대(鎭衛隊)가 압송해온 비류 김구(金溝), 김순여(金順汝),

된 근대법령을 살펴보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막연하게 구례의 관습대로 재판
을 해온 지방재판소 판사들을 아울러 질책하고 경고하는 내용이였다. 당시 위
정자들에게 동학교도는 정치적 역모(逆謀)를 꾀한 비류(匪類, 불손한 무리)로
낙인되고 있었기에 이런 무리를 체포할 때는 즉시 전쟁시에 준하여 '선참후계
(先斬後啓, 먼저 처형을 하고 나중에 보고)해온 것이 관례적이였다. 당시 전라
북도재판소 판사였던 전라도관찰사 윤창섭도 이런 관례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동학교도들을 즉시 교형으로 처형하고 사후에 보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근대적 법령을 제정하여 국가권력의 폭압적 행사로부터 불법적인 감금과
징벌의 남용을 방지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시 형사재
판제도 개혁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라북도재판소의 이같은 즉결처분(卽決
處分)은 인명을 함부로 살상하지 않는다는 '인명존중'의 대의명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형은 물론이고 중신형 이상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든 유배형이든
모두 법부에 관련 문안을 갖추어 보고하여 그 법부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하도
록 정한 새로운 법률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1896.4.1.) 및 『형률명례』
(1896.4.4.) 등의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마땅히 문책을 받아야
할 징계 사안에 해당되었던 것이다.²³⁾ 이밖에도 법부는 가혹한 형벌도구들[刑

황준삼(黃俊三), 백낙중(白樂中), 이경태(李敬泰) 등 여섯 놈을 재판소로부터 엄하게
조사하고 따져 물어서 범죄한 정상(情狀)과 절차(節次)를 아울러 모두 자복(승복)하였습
니다. 그러므로 조급이라도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이번 달 8일에 경무관보(警務官補)
이종덕(李種德)으로 하여금 위에 말한 죄인 여섯사람을 한꺼번에 교형(絞刑)으로 처형
했습니다. 이에 선고문을 수정(修正, 바르게 작성)하고 올려보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
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 올해(=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제9조
“한성(서울) 외 각 지방 각 개항장 재판소의 인명(人命)이나 강도(強盜)의 옥안(獄案)에
‘사형(死刑)에 처할 만한 자는 법부에서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연후에야
그 처형하는 것을 허가함’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제15조 “각 재판소에 있는 역형(役刑)
중신 이상 형율에 해당할만한 죄인은 반드시 법부대신의 지령을 기다려서 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함”이라고 한 칙령(勅令)이 밝게 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재판소에서 새로
반포한 법률을 아직도 받들어 열람하지 않아서 이같이 마음대로 결단을 한 것이라서
진실로 심히 놀랍고 의심스럽습니다. 제7호 보고서 내에 신고서를 작성한 말투가 모호할
뿐 아니라 죄인을 적당히 유추하고 단안할 뿐 적합한 형율에 따르지 않고 다만 '의법(법
에 의거한다)' 두 글자를 적당히 갈겨써서 함부로 판단을 한 사실과 정상(情狀)을 참작하
여 형량을 판단하라는 이전의 훈령에 따르지 않고 법부에 질문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대변에 경감해 준 것은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역시 가히 해괴한 일입니다.
사안의 체모를 따져볼 때 이미 (지난 일이라) 바꾸어 재판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번에 재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차 논의하여 경고하고 문책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을 경계로 삼아 다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3) 갑오개혁 이후 개화파 정권이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군인의 경우에는 총살형, 일반
인의 경우에는 교형으로 통일한 이후에 실제로 동학교도의 괴수로 불리던 전봉준 손화
중 최경선 등 지도부를 교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팔도(八道)의 관찰사와 오도(五都)의

具 또는 獄具]을 사형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²⁴⁾, 고부간(姑婦間)에 주로 나타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가 강요되어 약자의 자살까지 초래되는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의 경우에도 유교적 가부장제(家父長制)라는 윤리구조의 틀을 유지하는 한도를 지키면서도 약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지시하였다.²⁵⁾

이처럼 법부가 나서서 지방의 모든 재판소의 심리와 조율, 중대사건 보고와 지시에 따른 절차적 처리를 세세하게 강조한 것은 당시 신구의 법률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계몽 없이 한꺼번에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신법령의 제작 및 반포과정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²⁶⁾ 당시 형사재판제도와 감옥운영의 근대화를 추진하던 법부는 미리 이같은 신법제 운영과정의 혼란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각 지방재판소가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독자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반드시 법부의 지시와 훈령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법령 체제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서 심리, 조율, 사면, 석방 등에 관한 세세한 사건의 계도까지도 시행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법부의 지방재판소 계도(啓導) 내지 훈계(訓戒)와 질책(叱責)의 과정은 갑오개혁 이후부터 광무연간까지도 계속되었다.²⁷⁾ 이상은 당시 인권을 중시하던 개화정권의 재판제도 개혁의지를 전북 지역에서도 충실히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유수들에게 널리 전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이 새롭게 변한 형사재판제도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앞의 『기안(起案)』 제1책 개국 504년 5월 2일(문서집행일) 『훈령 - 팔도관찰사오유수』(*서울대규장각 영인본 『법부기안1』 p.13)

24) 앞의 책 『역주사법품보』 권1.p.139 안무사가 법부에 보내온 공문 1895년 3월 23일

25) '위핍인치사'와 관련해서는 원재연, 『1890년대 유교 이념과 위핍률(威逼律) : 전북지역의 판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7권6호(아시아문화학술원, 2016.12) 참고.

26) 정공식, 『한국근대법사고(韓國近代法史攷)』 44-53쪽(박영사, 2002)

27) 법부의 이같은 지방재판소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재판 간섭 또는 계도의 사례는 전라북도 재판소에 대해서도 무수히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용서하기 어려운 6범을 제외한 남원과 전주 재판소의 정배죄인들을 즉시 석방하도록 한 1895년 11월 9일자 '지령', 동래부에 정배한 죄인 4명을 다시 압송하여 징역처단례에 따라 조율하고 처리(판결)하라는 전주부에 내린 1896년 1월 22일자 '훈령', 사형 및 중신징역 범죄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단한 사유를 전라북도재판소에 따져묻고 질책하는 1896년 9월 14일자 '훈령', 죄인에게 적용하는 율례를 선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보고하라는 전라북도재판소에 내리는 '훈령', 징역중신에 해당하는 범죄를 보고하지도 않고 전라북도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선고한 것에 대한 질책과 이에 대한 1897년 2월 18일자 조율건(훈령), 함열군의 늑골죄인 주성룡을 마음대로 징역중신형에 처단한 사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전라북도재판소에 내린 1898년 4월 1일자, 8월 24일자 '훈령' 등. 이상은 모두 앞의 서울대규장각 영인본 『법부기안』 1~3권의 목차에서 발췌한 것임.

(2) 개혁정치의 일환 또는 경축으로서 사면령의 실시

개혁정치 및 국가적 경축 등과 관련하여 실시된 각종 사면 관련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갑오개혁은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타율적 의도와 함께, 갑신개화당의 계통을 잇는 개화관료들의 자주적 근대화 의지가 함께 혼재된 채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개혁이었다. 고종은 1894년 12월 16일 억울하게 죄를 입은 사람들의 죄를 풀어주고, 이미 죽은 이들은 신원을 회복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⁸⁾ 이는 이보다 4일 전 고종이 개혁정치를 다짐하는 「홍범14조」를 반포하면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감금이나 징벌의 남용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에 따라 12월 27일 법무아문은 죄인으로 유배되었다가 석방의 은택을 입지 못한 자와 죄인의 친척으로 노비가 되어 유배된 자를 모두 석방하도록 건의하였고 이를 고종이 허락하면서 각도에 유배된 죄인들의 현황과 함께 해당 대상자들을 모두 석방한 후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²⁹⁾ 이에 전라도 (감영) 재판소에서는 나주 유배죄인 박재원 등을 비롯한 영암, 부안, 홍양, 강진 등지의 유배죄인 14명과, 장성에 연좌로 유배된 죄인 건섭의 딸 중혜를 비롯한 장수, 금산, 무주, 남원, 용안, 함열, 해남, 영광, 옥구 등의 연좌 유배죄인 15명을 모두 석방하였다.³⁰⁾ 1895년 6월 27일, 고종은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대국민 사면령을 또다시 결정하였고³¹⁾, 이에 따라 법부는 7월 22일 「각도(各道)의 도형, 유형[徒流]에 해당하는 죄인 및 수령(守令)이 아직까지 처결하지 못한 죄인의 석방(釋放)에 관한 훈령(訓令) 건」을 내려서 각도 지방재판소에서는 6가지 중요범죄[六犯, 모반, 살인, 절도, 강도, 간통,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사기)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를 저지른 죄수로서 석방할만한 대상자의 명단 등을 보고하도록 전국 지방재판소에 일제히 지시하였다.³²⁾

28)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12월 16일(무오)

29) 한상권 역주, 『역주사법품보』 1. No.171 「연좌유배죄인 석방에 대해 전라감영에서 보고하다」(1895.4.9.) 봄날의 책(2018.3). 이하에서 각 권마다 역주자가 다른 이 책의 역주자는 따로 밝히지 않는다.

30) 위와 같은 곳

31) 『승정원일기』 고종 32년 을미(1895) 6월 27일(병신) ; 이 사면령에서는 범죄의 죄질이 나쁜 6가지 범죄[六犯] 즉 모반, 살인, 절도, 강도, 간통,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죄는 사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32) 『기안(起案)』 제1책 개국 504년 7월 22일(문서집행일) 「훈령 - 각도각부관찰사」(*서울대규장각 영인본 『법부기안1』 p.64) ; 이같은 일련의 개혁적 사면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1895년 9월 25일 발송된 남원부 관찰사 백란윤의 보고 제2호에는, 8월 22일 접수한 법부의 제227호 훈령에 따라서, 6범(모반, 살인, 절도, 강도, 간통, 사기 등 여섯가지 중요범죄)을 제외하고, 이전에 보고한 각도의 도형, 유형 죄수 명단에서 누락

고종의 개혁적 사면정책은 유배죄인을 석방시켜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유배 이하의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감등(減等)해 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897년 7월 31일 전라북도 관찰사 윤창섭은 당시 법무대신 한규설에게 보낸 제 26호 질품서에서 그해 2월 26일 반포된 사면령에 입각하여 당시 전라북도재판소의 관할 하에 수감되어 있던 징역 죄인들의 명단을 보고하면서 죄의 등급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질품서에 의하면 금구의 박사옥, 장성의 김두봉, 구례의 박한정, 김석표, 고부의 고태식, 함열의 김용훈, 전주의 김병섭, 최대연, 무주의 고동업, 김봉주, 박두술, 임실의 김인식 등 모두 12명의 징역종신(懲役終身)의 죄를 받은 죄수들의 등급을 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들은 앞서 언급한 용서하기 힘든 6범에는 속하지 않지만, 남의 무덤을 파헤치거나 백성을 못 살게 굴거나 사술(邪術)을 행하여 백성을 현혹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 외에도 사굴죄로 징역 2년에 처해진 고부의 이국진, 병정을 사칭하고 백성을 괴롭혀 징역 3년에 처해진 전주의 이경백, 선교사를 사칭하고 민간에 폐단을 끼쳐 징역 3년에 처해진 전주의 김홍구 등의 죄도 또한 한 등급씩 감해달라고 요청했다.³³⁾ 그런데 이즈음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각각 1등급씩 감형(減刑)해 주려는 조치를 미처 취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면 조치가 거듭 내려졌다. 갑오개혁 직후부터 건양 연간까지 취해진 사면 조치가 일종의 개혁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즈음의 사면 조치는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고 보여진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광무’(光武)라는 새로운 연호의 사용에 따른 경축적 조치였던 것이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선포와 고종(高宗)의 황제위(皇帝位) 등극을 전후해서는 국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자는 대대적 경축사면(慶祝赦免)이 행해져서 전라북도재판소 관할 하의 많은 죄수들이 그 혜택을 입었다. 법부는 10월 전국 13도(道) 6항(港)에 「징역(懲役) 중 6범 외 방송(放送) 및 6범과 미결수(未決囚) 중 가합감등 방송자(可合減等放送者) 치보(馳報) 건」의 훈령을 내렸다. 이 훈령에 따라 전라북도 관찰부에서는 같은 해 10월 13일 징역종신에 처해진 죄수 12명에게는 2차례의 사면을 합하여 징역종신에서 징역 15년, 징역 15년에서 다시 징역 10년으로 2등급을 감등해주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 죄수 2명에게는 2등급을 감하여

된 이들을 비롯하여 감영에서 유배보내고 법부에 보고하지 않은 자들을 성책하여 제출한다고 하였다. 또한 남원부에 유배되었으나 명단 보고에서 누락된 12명을 즉시 석방했다고 보고했다. 이 또한 인권을 중시한 개화와 정권의 법제개혁의 의지가 전북지역에서도 관철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3) 앞의 책 『역주사법품보』 5. No.195 「임금의 감등지시에 따라 감등 대상 징역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가 질품하다」(1897.7.31.)

징역 2년으로 감해주기를 바란다고 보고했다.³⁴⁾ 그 명단과 죄목, 사면결과 등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897.10.13.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형의 감등을 요청한 죄인들 명단과 그 감등내역

지역	죄수명	죄목(罪目)	선고	1차 사면	2차 사면	감등결과
금구	박사옥	백성을 못살게 군 죄	징역중신(1896.4)	1897. 7. 31	1897. 8. 28	징역10년
장성	김두봉	백성을 못살게 군 죄	유3,000리(1895. 11) ⇒징역중신(1896. 7)			
구례	박한정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징역중신(1896.8)			
고부	고태식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징역중신(1896.12)			
함열	김용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징역중신(1896.12)			
전주	김병섭	백성을 못살게 군 죄	징역중신(1896.8)			
전주	최대연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징역중신(1896.11)			
무주	고동엽	사술을 부려 백성을 선동한 죄	유3,000리(1895. 10) ⇒징역중신(1896.2)			
무주	김봉주	사술을 부려 백성을 선동한 죄	유3,000리(1895. 10) ⇒징역중신(1896.2)			
무주	박두술	사술을 부려 백성을 선동한 죄	유3,000리(1895. 10) ⇒징역중신(1896.2)			
임실	김인식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징역중신(1897.3)			
구례	김석표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징역중신(1896.5)			
전주	이경백	백성을 못살게 군 죄(병정사칭)	징역3년(1896.8)	1897. 7. 31	1897. 8. 28	징역2년
전주	김홍구	민간에 폐를 끼친 죄(선교사 사칭)	징역3년(1896.4)			

이러한 전라북도 관찰사의 요청(품의)에 대해 법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보이지 않지만, 당시 법무를 중심으로 단행된 각종 사면 조치가 여러 번 계속되었고, 거듭해서 이전의 사면 대상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죄수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훈령이 전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전북 재판소에도 거듭 내려지고 있었음을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아마도 전라북도 관찰사가 요청한 감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의 사면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1897년 4월로 이미 형기(刑期)가 끝난 1명(고부 이국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죄수는 2차례 사면대상자로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전라북도 지역의 죄수들은 다른 지

34) 앞의 책 『역주사법품보』 6. No.37 <사면대상자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97.10.13.)

역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경축을 위한 거둬진 특별 사면의 결과로 이처럼 몇 달 만에 2등급씩 감형되고 있는 특별한 은사(恩赦)의 혜택을 누렸던 것이다.

(3) 감옥시설 정비와 노임, 식비 등 각종 비용의 조달 문제

감옥시설의 수리 및 징역죄인의 역비 지급, 침식 제공 등과 관련된 막대한 감옥운영 비용의 증가는, 이제까지 설명한 것과는 달리 당시 법제개혁의 주체로 나섰던 법부가 한 발 뒤로 쫓겨나면서 감옥서가 내부 소속의 경무청(警務廳, 이전의 좌우포도청)에 직속되어 있음을 근거로 각 재판소에서 내부대신에게 직보하여 필요한 조처나 지원을 받아내도록 유도했다. 1895년 6월 전국 23부제의 실시로 관찰부가 설치된 남원부에서는 1895년 9월 기존의 옥사가 형태도 없이 무너진지 오래되므로 죄수를 수감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감옥서(監獄署)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법부는 옥사의 건축 및 수리는 내부의 소관이니 내부로 보고하라고 했다.³⁵⁾ 이는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환원된 1896년의 경우에도 계속되었다. 1896년 10월에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시한 법부의 지령³⁶⁾에 의하면, 징역살이 하는 죄수의 식비를 조달하는 일은 내부의 소관임을 분명히 밝히고, 각 지방재판소에서 내부에 직접 보고하여 관련 예산을 얻어낼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그때까지 감영이 있는 전주부의 옥[府獄]에 데려다가 노역(징역)을 시키기도 했지만, 간혹 고을의 옥[郡獄]에서도 징역형을 실시해왔음을 알 수 있다.³⁷⁾ 그러나 법

35) 앞의 책 『역주사법품보』 1권. 252쪽, No.336 <감옥서 배치 등에 대해 남원부에서 질품하다> 및 『기안(起案)』 제1책 1895.9.23(문서집행일) 『지령 - 남원부』>(*서울대규장각 영인본 p.99)

36) 앞의 『기안(起案)』 제1책 1896.10.22(문서집행일) 『지령 - 전라북도관찰사』 p.586 ; ... 귀 재판소의 제5호 질품서(質稟, 질의하고 품의한 공문)를 받아보니 그 내용에, “도내 각군에 감당하여 처리하고 있는 죄수들[囚徒等]을 본부(本府, 전주부)로 끌고 와서 법률에 따라 징역(懲役, 강제로 노역)을 시켰고, 혹 각 군(郡)에서 징역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일을 시킴에 3끼 식비(食費)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마련할 방도가 없으므로 이에 질품하니 참작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죄수[囚徒]의 식비는 내부(內部)가 관장하는 일이니 곧바로 내부에 보고하여 그 구획(區劃, 떼어서 지급)함을 기다릴 것이며, 징정(懲丁, 징역살이 하는 죄수)의 일하는 장소(役所)의 경우, 군옥(郡獄, 고을의 형옥)에 있는 죄수들을 반드시 귀 재판소(전라북도 재판소가 있는 전주 감옥)로 데려와서 노역을 하게 함으로써 (죄수를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이에 (그렇게 하기를) 지령합니다.

37) 1895년 7월의 경우 당시 남원부에 속했던 무주군에서는 일찍이 영흥군으로 유배 보냈던 갈기범을 도로 압송하여 무주군에서 징역살이를 시켰다.(『역주사법품보』 2권, 290쪽, No.233 <영흥군 유배죄인 갈기범의 처리에 대해 남원부에서 보고하다.>)

부는 죄수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또한 징역비용을 일반 고을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각 고을의 옥에서 징역형을 시행하기보다는 전주부옥(전주감옥)에 데려와서 죄수들의 징역을 시행하기를 지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⁸⁾ 그런데 징역죄인의 노역비용을 내부의 소관으로 돌렸던 법부가 각 지방재판소에서 징역살이 대신에 죄수들로부터 받은 속전(贖錢)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부로 그 내역과 함께 전액을 상납하게 했다.³⁹⁾

3. 감옥 시설의 정비와 관리 감독의 강화

1) 읍사례를 통해 본 감옥시설과 관리 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역처단례>의 실시는 감옥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도와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들은 기존의 낡은 감옥시설(監獄施設)을 보수(補修)하기 위해서, 또 증가된 죄수들의 식비(食費)와 징역에 따

38) 이와 관련하여 앞의 책 『역주사법품보』 5권, 71쪽, No.32 <훈령에 따라 유배죄인 정세모 등을 징역으로 바꾸는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사가 보고하다.> ; 이에 의하면 고산의 정세모, 장성의 김두봉, 무주의 고동업, 박두술, 김봉주 등은 모두 유배값다가 다시 징역형으로 바뀌어 유배를 보낸 본 고장으로 되돌아왔으나, 징역형을 관찰부에서 실시하라는 법부의 지시에 따라 모두 전주감옥으로 이송해와서 징역형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단 죄수가 징역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래의 고을 감옥[군옥]으로 보내서 감금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산의 징역죄인 정세모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위의 책(5권) 73쪽, No.34 <고산군의 사망한 정세모 옥사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사가 보고하다.> 징역형을 관찰부에서만 실시한 사실은 창원군에 오랫동안 유배되었다가 1895년 7월 21일 고산군으로 돌아온 정경화를 동년 8월부터 전주부로 압송하여 징역형을 실시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정경화는 고산에서 창원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병사함으로써 그에게 징역살이를 하게 하지는 못했다. 같은 책(5권) 123-125쪽, No.68 <훈령에 따라 유배지에서 도망친 정경화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사가 질품하다.>. 또 1896년 12월 고부군에 수감된 김인식을 징역 10년형에 처하기 위해 전주 관찰부로 올리라는 지시를 전북관찰사가 고부군수에게 내린 사실도 있다. 같은 책(3권) 280쪽, No.187 <전주 이중익의 아버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인식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에서 보고하다.>

39) 『역주사법품보』 권2.p.220. No.158. 『징역형과 태형 죄인이 없어 거둔 속전이 없는 현황에 대해 전주부에서 (법부에) 보고하다』 (1896.6.15.) ; 이에 의하면 법부의 훈령에 “죄인의 징역살이와 태형에 대해 거둔 속전을 모두 모아서 매월 말에 법부로 보내라”는 내용이 있음이 드러난다. ; 이를 단순히 조직 체계상의 문제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각 지방재판소에서 감옥운영 비용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수들에게서 징역 대신에 받아낸 속전을 해당 지방재판소나 지방 감옥의 운영에 보태쓰도록 하지 않고 법부로 꼬박꼬박 상납을 받아냈던 것은 일종의 ‘부서이기주의(部署利己主義)’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른 노임(勞賃)을 제공하기 위해서, 감옥 관리자들의 급료(給料)를 지불하기 위해서 상당한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로는 경기도재판소와 충청남도재판소의 사례가 있는데, 극심한 재정부족으로 징역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기아에 허덕이면서 다수의 수감자가 굶어죽었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⁴⁰⁾ 전라북도의 경우도 일단 이들 지방과 사정이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 살펴본 법무기안에 나온 1895년 9월 남원부의 사정과 1896년 10월 전라북도재판소의 사정을 언급한 1건의 문서 외에는 이 시기(갑오개혁~광무개혁 초기) 본격적인 다른 관련 자료가 찾아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해당 시기의 전라북도 각 고을의 사정을 기록한 읍지(邑誌)에서 갑오~광무개혁을 전후한 시기에 감옥의 사정을 살펴볼 자료로서 갑오개혁 이후부터 1899년까지의 전라북도 각 고을의 읍사례(邑事例)를 찾아보았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필자는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 개혁기 근대 전라북도 각 고을의 읍지 중 형옥관련 기사에 대한 분석

현 지명 (2019년)	옛 지명 (1896년)	1871년	1895년	1896~1899년	부속지도상 '옥'에 대한 표기
고창군	고창군		형청(3칸), 형옥(3칸) 수형리, 형청직		북문 옆에 옥 (읍성 내 동북쪽)
	무장군				1897년 지도상에 옥 표기
	홍덕군	형방청	형방청, 사령청		

40) 1896~1898년 경기도재판소에서는 조정의 가획(加罰, 특별히 추가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감옥의 죄수들 중에 10여명이 굶어 죽었고, 나머지 죄수들도 매일 죽 한 그릇씩 먹여 근근히 생존해가고 있는 긴박한 사정을 호소하였고(『사법품보』 제3책, pp.222-223, 경기도재판소 보고서 제27호, 1898.8.15.), 1897년 충남재판소의 징역죄수들은 비생산적인 작업에 동원되면서 1일 노임 1량4전 정도를 받았는데 영양실조로 노역 중에 쓰러지는 죄수가 속출했고, 징역에 동원되지 않은 죄수들은 징역죄수들의 10~20%에 불과한 식비로 극한 기아 상황을 간신히 이겨냈다(『사법품보』 제1책 p.629, 충청남도 관찰부 재판소 보고서 제19호, 1897.2.20.)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감옥들은 재정 상황이 비교적 좋고 감옥에 죄수가 적은 고을로 죄수들을 이송하는 대책들이 시행되었다.(『사법품보』 제2책 p.281, 경상남도 안의군수 보고서 제2호, 1897.10.1)

현 지명 (2019년)	옛 지명 (1896년)	1871년	1895년	1896~1899년	부속지도상 '옥'에 대한 표기
군산시	옥구군		형방청, 형서, 외옥		지도상 표기 없으나 읍지내 서술
	임피군		옥우(獄宇) : 남옥, 여옥 각2칸, 등근담장 82척	「봉림(元)」	지도상 표기 없음
김제시	김제군		형방청, 사령청 형방	장청에 근무하는 도장 (都將) 6인이 5일에 1번 입번하여 감옥, 죄인의 정배, 이수 등 담당. 형구 가격 잡미 5석5두로 무입(賃入) 정배죄인 양미-매삭 1인당 7두5승 환미지급, 현재 민호에서 마련하여 보수주인에 지급	
	금구군				
	만경군		형방청, 장청	「봉림(元)」 군수700, 향장72, 순교(4)192, 수서기84, 서기(6)360, 통인(2)72, 사령(6)216, 사용(2)72, 사동(2)72, 객사직12, 향교직12, 향사비80, 청비150, 여비60, 소계2,154원	지도상 표기 없음
남원시	남원군		순교청, 사령청	「봉림(元)」 군수1,000, 향장72, 순교(6)288, 수서기96, 서기(8)576, 통인(3)108, 사령(8)288, 사용(4)144, 사동(3)108, 객사직12, 향교직12, 향사비100, 청비250, 여비90, 소계3,144원	지도상 표기 없음
	운봉군	형옥 (옥고) : 중고, 남고, 여고 각3칸		「봉림(元)」 만경군과 동일함	
무주군	무주군		형방, 형구	형청(관문 동쪽, 6칸)	
부안군	부안군			「봉림(元)」 군수800, 향장72, 순교(5)240, 수서기84, 서기(7)504, 통인(2)72, 사령(6)216, 사용(2)72, 사동(2)72, 객사직12, 향교직12, 향사비80, 청비200, 여비70, 소계2,506원	
순창군	순창군				

현 지명 (2019년)	옛 지명 (1896년)	1871년	1895년	1896~1899년	부속지도상 '옥'에 대한 표기
완주군	고산군	철종 이전 편집본 옥표기			지도상 표기 있음 (사창 서쪽)
익산시	익산군			「봉림(元)」 부안군과 동일함	
	용안군			「봉림(元)」 만경군과 동일함	
	여산군			「봉림(元)」 부안군과 동일함	
	함열군		형방색 차지, 순교청, 사령청, 구류간	「봉림(元)」 부안군과 동일함	
임실군	임실군				
장수군	장수군				
전주시	전주군	형방청, 사령청, 포도군 관청	관아에 대한 상술	「봉림(元)」 남원군과 동일함	
정읍시	정읍군		사령청, 무교, 형방, 형구, 정배 등 상술		
	고부군				
	태인군		형방색		
진안군	진안군		사령청, 순교청	「봉림(元)」 부안군과 동일함	
	용담군			「봉림(元)」 만경군과 동일함	
소계 (6시8군)	26군	형옥 설명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음	형정(옥정 포함)과 관련된 서술을 간접적으로 형옥사정 추론 가	고을의 「봉림」은 대체로 2,154원, 2,506원, 3,144원 등 3종의 등급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위 <표 3>의 간략히 서술한 부분들 중에서 각 고을별로 감옥의 운영과 관련 있는 형정(형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용한 자료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1983년, 200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펴낸 영인본들을 위 도표를 작성하는 데에 주로 활용했다.⁴¹⁾ 호남읍지(규12181) 중

41) 구체적으로 한국지리지 총서의 일환으로 영인해낸 서울대 규장각 1983년 영인본, 『읍지(邑誌)』 전라도편 2권(1872년 호남읍지 11책, 1895년 호남읍지 18책) 및 같은 곳에서 규장각자료총서 지리편의 일환으로 2003년 펴낸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22권

에서 제7책에 수록된 “고창현읍지”(1895년 추정)에는 형옥이 3칸으로 나와 있고⁴²⁾, 아울러 이를 관리하는 형청(刑廳)이 3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의 관노청(官奴廳)을 사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전의 내아(內衙, 6칸)가 무너져 황폐해지자 이를 수리하여 형리청(刑吏廳)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형정을 담당하는 수형리(首刑吏)가 1인 있어서 흙홀(欽恤)을 거행하고 사송(詞訟)을 담당한다고 했다.⁴³⁾ 1896년 전후에 작성된 “김제읍지”(규12181, 호남읍지 제11책)에는 「읍사례」 부분에서 감옥 형정과 관련하여, “장청(將廳)에 근무하는 도장(都將) 6인은 5일에 1인씩 입번하는데, 조석으로 감옥과 정배된 죄인, 죄인의 이수(移囚) 등에 관여한다고 서술되어 있다.⁴⁴⁾ 한편 「형방」 조에는 토포색(討捕色)을 겸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구(刑具)의 가격으로 잡미(雜米) 5석5두를 옥쇄장이가 받아내서 장(杖), 태(笞) 등의 형장을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곤목(梱木, 곤장으로 사용하는 나무)은 베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가(枷, 수인의 목에 채우는 나무갈, 형구)로 사용할 목판은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정배죄인에게는 양미(糧米)로 매삭에 매1인당 7두5승을 환미(還米, 환곡) 중에서 지급했는데, 지금은 읍내 민호(統과 洞) 중에서 마련하여 그 보수주인(保授主人)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⁴⁵⁾ 1871년경 운봉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운성지(雲城誌, 규12175)에는 「옥고(獄庫)」 조에서 형옥(刑獄)을 서술하되 관문 동쪽에 있고, 중고(重庫, 중죄수를 가두는 곳), 남고(南庫, 남간), 여고(女庫, 여간)가 각 3칸씩 모두 9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⁴⁶⁾ 1895년경 편집된 “임피군읍지(臨陂郡邑誌, 규12181, 호남읍

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읍지(邑誌)』 전라도편 2권과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22권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보다 자세한 해제를 갖추고 상세하게 분류, 정리된 후자를 활용하였다. 죄수를 수감한 고을의 사례는 앞서 언급한 『기안』(법부기안)과 『사법품보』를 활용했다.

42) 참고로 1872년 군현지도에는 동헌의 북쪽에 원형 담으로 둘러싸인 옥이 보인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1996.5) 중 「고창현지도」(규10602)

43) 앞의 『전라도읍지』 권2

44) 앞의 『전라도읍지』 권4

45) 앞의 『전라도읍지』 권5 ; 한편 나문경, 과부 김씨 등이 1897년 6월 김제군 감옥에 갇혔다. 『역주사법품보』 5권, 216-217쪽, No.128 <김제군의 최조이 사망사건의 범인 나문경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사가 질품하다.>

46) 앞의 『전라도읍지』 권14, p.151 ; 운봉군옥에 수감된 사례는 1896년 12월 도적 정판대가 수감된 상태였고(『역주사법품보』 4권, 40-41쪽, No.13 <운봉군에서 붙잡힌 화적을 따르던 정판대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사가 질품하다.>), 1897년 3월 위꺾치사 사건의 피고 김복표가 수감되었다.(『역주사법품보』 4권, 202-203쪽, No.122 <운봉군의 독약을 먹고 자살한 박윤홍 사건의 죄인 김복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사가 질품하다.>

지 제11책)’의 『옥우(獄宇)』 조에는 남옥 2칸, 여옥 2칸, 주위 82척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⁷⁾ 한편 위 <표3>의 읍지분석에서는 전주의 옥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⁴⁸⁾, 전주는 관찰사가 주재하는 감영이자 전라북도재판소가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는 1895년 4월 24일 <각 지방에 감옥서(監獄署)를 설치하는 건>으로 재판소와 함께 서울의 전옥서에 비견되는 감옥서가 설치된 것이 분명하다. 감옥은 기결감과 미결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기결감에서 징역죄인을 수감하면서 각 고을에서 이감되어온 죄수들이 징역살이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가장 많은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었다.⁴⁹⁾ 1899년 11월 1일자 전라북도재판소의 보고에 의하면, 전북 관내의 전주, 무주, 진산, 금산, 임피, 임실, 금구, 김제, 순창, 고부, 옥구, 정읍, 부안, 태인, 진안, 용안 등 16개 고을에 39명의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중 전주군에 가장 많은 8명의 죄수가 있었고, 이 중에 6명은 기결수, 2명은 미결수였다.⁵⁰⁾

1896년 설정된 전라북도 지역에 속한 위의 26개 고을[郡]의 읍지와 『사법품보』⁵¹⁾ 등에 나타난 형옥 및 그곳의 수인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해 보면 다

-
- 47) 앞의 『전라도읍지』 권15, p.131 ; 임피군(현 군산시)의 경우에는 1897년 1월 정운집이 수감된 상태였다.(『역주사법품보』 4권, 93쪽, No. 46 <임피군 천홍수 옥사의 정범 정운집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사가 질품하다.>)
- 48)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앞의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1996.5) 중 『전주지도』(규10468)에 의하면 전주성내 북동쪽 귀퉁이에 옥이 위치하고 있다.
- 49) 전주감옥과 관련된 수감자의 실례를 찾아보면 1897년 1월 이성범 옥사의 정범 강덕운이 전주감옥에 수감되었으며(『역주사법품보』 4권, 92쪽, No.45). 비슷한 시기 안조이 위궤치사 사건의 피고 한원중이 수감되었다.(같은 책 4권, 98쪽, No.48) 또한 이곳 전주감옥에는 전라북도 내 각 군옥(郡獄, 군의 옥)에 수감되었다가 징역살이를 위해 이감(移監, 옥을 옮김)된 징역죄수[懲丁, 役丁]들이 거처한 곳이었다. 고산의 정세모, 장성의 김두봉, 무주의 고동업, 박두술, 김봉주 등이 본 고을에서 1895년 9~10월 타도로 유배되었다가 1896년 5~8월 전주로 압송되어 징역을 살았고(같은 책 5권, 71쪽, No.32), 경남 창원군에서 전북 고산군으로 유배를 보낸 정경화는 잠시 고산군옥에서 대기하다가 징역을 살기 위해 전주감옥으로 압송(이감) 조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경화는 탈옥하여 자기 집에서 병사하였다.(같은 책 5권, 123쪽, No.68).
- 50) 원재연, 앞의 논문(2017.4) 『인문사회21』 제8권 2호, 282쪽
- 51) 전북에 속한 고을 중에 위 읍지에는 감옥이 언급이 되지 않은 고을의 감옥에 수감된 사례를 『역주사법품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금구군(현 김제시)의 경우 임노량 옥사범인 김창서가 1898년 1월 수감된 상태였고, 김조이 옥사와 관련해서 1897년 5월 김진여도 수감 중이었다.(위의 책 『역주사법품보』 5권, 81-82쪽, No. 43). 무주군의 경우에는 박조이의 위궤치사 사건으로 문조이가 수감된 상태였다.(같은 책 5권, 73-74쪽, No.35). 또 무주군에는 김조이, 두 명의 이가, 1명의 박가 등이 1897년 9월 수감되어 있었다.(같은 책 6권, 103-104쪽, No.46). 부안군의 경우에는 미국선교사를 사칭하면서 민간에 폐단을 자행한 김홍구가 1897년 5월 부안감옥에서 전주감옥으로 이송되었다.(같은 책 5권, 155-156쪽, No. 89). 또 부안군에는 주영숙이 옥사로 1897년 9월 수감된 상태였다.(같은 책 6권, 99-101쪽, No. 43). 순창군의 경우에는 1897년 2월

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읍지에서 형옥에 관련된 서술을 하고 있지 않거나, 서술하고 있는 소수의 읍지에도 읍지에 첨부된 고을 지도에 옥의 위치를 표기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정도로 적다. 대부분의 읍지에서는 형옥(刑獄, 옥) 대신에 이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형리청(刑吏廳) 또는 형청(刑廳), 장청(將廳), 사령청(使令廳) 등에 대한 서술로 대신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당시 서울과 일부 개항장에서 근대적 형옥의 건설과 기존 옥사의 수리 등을 통해서 형옥 시설이 정비되어 가고 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사정을 보여준다. 이같은 사정에 대해 필자는 우선, 본고가 취급하는 시기(1894~1900년)가 짧은 만큼 이를 중세적 형옥에서 근대적 감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모습이 라고 보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은 1900년 이후 전북 사정을 기록한 자료를 찾아야만 해명할 수 있다.

둘째, 옥사를 관리하고 유배자를 포함한 죄수들을 통제하는 사령, 형리, 옥쇄장이 등에게는 일정한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소수의 고을에서만 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보아서 다수의 고을에서는 일정한 급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전라북도 지역의 각 고을은 대략 1년간 고을 전체 관리의 봉름(俸廩, 봉급)으로 가장 많은 수령(700~1,000元)부터 가장 적은 12원을 받는 객사지거나 향교지기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액수가 2,154원, 2,506원, 3,144원 등 모두 3등급 체제로 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해당 고을의 재정적 탄실도와 읍세(邑勢)를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관리들의 봉급에서 감옥 사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령(使令)들의 경우에는 고을당 6~8명 가량의 인원이 모두 216~288원(元), 1인당 평균 36원 정도의 급료를 받고 있으며, 순교(巡校)는 고을당 4~6명이 소계 192~288원, 1인당 평균 48원 정도의 급료를 책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9칸의 감옥시설을 포함한 고을 청사의 관리비는 150~250원으로 이중

전조이 자살사건의 범인 권성필이 수감된 상태였다.(같은 책 4권, 186-187쪽, No. 108). 고산군(현 완주군)에는 1897년 4월 전주에서 징역살던 정세모가 옮겨와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병사했다.(같은 책 5권, 73쪽, No.34). 임실군의 경우 1897년 3월 옥사사건의 범인 박영재가 수감된 상태였다.(같은 책 201-202쪽, No.121). 고부군에는 1896년 12월 임실의 김인식이 수감되어 있다가 징역 10년형을 살기 위해 전주부로 이감되었다.(같은 책 3권, 280쪽, No.187). 태인군의 경우는 1897년 9월 김화보 옥사와 관련된 이기순이 수감된 상태였다.(같은 책 6권, 105쪽, No.47). 진안군의 경우 1897년 9월, 위꺽치사죄로 박정삼이 수감된 상태였다. 용담군(현 진안군)의 경우 1897년 6월 화적 백희준이 수감 중에 병사했다.(같은 책 3권, 280쪽, No. 188). 또 용담군의 경우는 1897년 2월에 호적 박문선이 수감 중에 병사했다.(같은 책 4권, 184쪽, No.105),

에 별도로 감옥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고을에서는 그 청사 관리비 중 일부를 감옥 운영비로 할당받았을 것이다.

셋째, 감옥의 운영과 관련하여 형구 또는 옥구의 구입[求質]과 관련된 일정한 비용이 매년 2차례 정도씩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전라남도의 경우와 통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대략 매년 미(米) 2석6두~5석5두 가량씩 배정되어 있고 이를 때로는 전량(錢兩, 돈)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례도 보여진다. 한편 감옥을 지키는 형리는 관아의 아전이나 읍내 주막의 백성들 중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윤번제로 수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형리나 옥쇄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봉급이 지급되고 있었는지 그 액수가 기록된 읍지가 1곳도 없는데, 이는 감옥제도의 근대화 초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일정한 급료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아마도 당시 전라북도 지역의 각 고을에 배당된 공전(公錢) 중에서 극히 소량씩을 1년에 몇 차례씩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또 동시기 전남의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향후로 미룬다.

2) 수감자 관리의 어려움과 잦은 석방

1897년 2월 25일 전라북도 관찰사 윤창섭(尹昌燮)이 법부대신 한규설(韓圭高)에게 올린 제26호 보고서⁵²⁾에 의하면, 당시 전라북도재판소가 운영하는 감옥의 경우에도 미결로 인한 체옥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주 감옥은 1898년에 탈옥사건이 한 차례 일어났다.⁵³⁾ 전주 감옥의 경우는 1900년까지도 탈옥자 2명이 체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탈옥은 기본적으로는 부실한

52) 법부 제14호 훈령을 받들어, “각군(各郡)의 여러 해 판결하지 못한 죄수[積年未決罪囚] 중에서 살옥(殺獄)에 관계된 경우는 원래의 검안(檢案)을 올려 보내라[上送]”고 전칙(轉飭)하였습니다. 구례군수(求禮郡守) 이봉상(李鳳相)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본 구례군에 옥수(獄囚) 정범죄인(正犯罪人) 이성여(李成汝)가 감옥에 갇힌 지 지금까지 5년이 되었는데, ...

53) 『사법품보』 제3책 p.747,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4호(1898.11.30.) ; ... 본부(=전주 관찰부)에 수감 중이던 종신징역(終身懲役) 죄인 고부(古阜) 출신 천경화(千京化)와 임피(臨陂) 출신 정운집(鄭云集)이 올해(=1898년) 8월에 진위대(鎭衛隊) 병정 최재열(崔在烈) 등이 경무서(警務署)에서 소동을 일으킬 때, 그 분분한 틈에 순검(巡檢), 압뢰(押牢)가 당황하여 흩어진 것을 보고는 마음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둬타이르고 여러 가지로 추적하며 수색했습니다만, 여러 달에도 아직 잡아 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해당 2군(=고부군, 임피군)에 훈령을 발하여 철저히 기찰하고 살피게 하였습니다. ...

감옥의 노후한 시설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감옥 관리를 철저히 못한 옥쇄장이나 순교 등에게 더 큰 귀책 사유가 돌아간다. 즉 1898년 전주 감옥에서 일어난 탈옥 사건은 전형적인 관리 소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주 감옥에서 천경화, 정운집 등 2명의 중신징역형 죄수가 달아난 1898년 8월에는 1895년 4월에 설립된 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관찰사가 주재하던 전주에도 경무서(警務署)가 설립되어 있었고, 그 책임자 경무관(警務官)과 부관인 총순(總巡)이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감옥은 경무관의 통솔하에 있었고, 경무관은 전라북도 관찰사 겸 전라북도재판소 판사의 지휘하에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 경무서, 감옥(감영의 옥)은 서로 밀접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유기적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감옥 운영의 관리 체제하에서 감옥을 지키고 운영하는 경무서 내부가 진위대 병정들에 의해서 소란스러워지자, 순교(巡校), 사령(使令) 등이 흩어져 은신하는 바람에 앞서 언급한 천경화, 정운집 등이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전주 감옥에서는 여러 차례 이들 탈옥범(脫獄犯)들을 체포하고자 추적하고 수색했으나 적어도 1900년까지는 체포하지 못했음이 드러난다.⁵⁴⁾ 1890년대 전주의 감옥은 기결수와 미결수가 나누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려면 최소한 2칸 이상의 감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고 공주감영 옥과 마찬가지로 등근 담장이 옥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⁵⁵⁾ 1890년대 당시 지방 각 관아에 딸린 감옥시설들은 앞서 언급한 재정 부족으로 노후화된 채 방치되고 순교청, 장청, 형리청 등 다른 장소로 대치되거나, 땀질식 보수를 해서 근근히 사용해가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죄수의 탈옥이 빈번했지만, 감옥을 보수할 비용이 마련되지 못하여 전전공공하는 형편이었다.⁵⁶⁾ 또 당

54) 『사법품보』 제3책 p.747,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4호(1898.11.30), 동 제4책 pp.760-762,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39호(1899.11.1), 동 제5책 pp.130-132,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2호(1900.1.3)

55) 조선후기 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임재표, 『조선후기 인본주의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단국대 박사논문, 2001) 참고. 『사법품보』 제2책 p.677, 경기재판소 보고서 제4호(1898.5.2.)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옥은 도적을 가두는 칸[賊囚庫] 2칸, 일반죄수칸[役丁處所] 4칸, 잡범죄수칸[雜囚間] 2칸 등 수감시설이 모두 8칸이고, 옥리들의 거처인 압퇴 처소(押牢處所) 1칸, 수직 순검처소 2칸 등의 규모에, 철물, 석재, 목재 등의 재료비와 각종 인건비를 합쳐서 대략 674냥 5전 [=135원 90전] 정도의 비용이 든다.

56) 『사법품보』 제1책, pp.650-651, 평안북도 재판소 보고서 제25호(1898.4.21) ; 『사법품보』 제3책, p.89, 평안북도 재판소 보고서 제50호(1898.6.20.) ; 『사법품보』 제4책 p.493, 충청북도 재판소 보고서 제70호(1899.8.25.) ; 『사법품보』 제2책 pp.140-141, 평안남도 재판소 보고서 제28호(1897.7.7.) ; 『사법품보』 제5책 pp.189-190, 경상북도 재판소 보고서 제55호(1900.9.24.) ; 『사법품보』 제1책 p.691, 황해도 관찰사 보고서

시 감옥에서는 수감자가 감시의 소홀한 틈을 타서 자살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했다.⁵⁷⁾ 탈주와 자살 외에도 당시 감옥 내에서 죄수가 병들어 죽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으며, 살옥(殺獄)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정범(正犯)과 종범(從犯) 외에도 흔히 간련(干連), 사련(詞連) 등으로 표기된 사건의 목격증인이나 전문증인, 겨린(이웃), 동임(洞任), 면임(面任) 등이 수개월씩 옥에 갇혀서 사건이 해결되기만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사건의 정범이나 종범 죄인들이 도주하면 그 친척들이 대신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⁵⁸⁾ 이처럼 감옥에 여러 달 유치되어 있으면, 감옥에 갇힌 당사자들과 그들을 옥바라지하는 친척들만 괴로울 뿐 아니라, 때로 의탁할 곳이 없는 죄수의 경우 고을에서 최소한의 식비를 감당해야 했으므로 감옥 관리자로서도 고민스런 일이었다. 따라서 혹시라도 국왕의 사면령이 있게 되면, 감옥에 갇힌 이들은 물론이고 이들 죄수를 감시하고 지키는 이들까지도 모두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1897년부터 1900년 사이에 자주 내렸던 고종 황제의 사면령은 국가적 경축(慶祝)이나 심한 가뭄, 또는 전염병의 창궐 등이 있을 때마다, 많게는 한 달에 2번씩이나 거듭 사면령을 내려, 경수(輕囚, 경범죄인)를 석방하고 중수(重囚, 중죄인)를 감등해주었다. 또 각 재판소에서도 죄수에게 제공될 식비나 노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관리들의 감염을 우려해서⁵⁹⁾, 또 추수철의 노동력 제공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죄수들의 일시 보방(保放)을 자주 건의하거나 아예 석방[放送]시키는 일도 잦았다. 이는 그만큼 당시 감옥을 관리하기가 어려웠음을 반증해주는 내용들이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광무개혁의 초기(1899년)까지, 조선 왕조의 행정 중에서 감옥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수인(囚人)의 인권이 신장되는 측면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당시 재판에서 실제 사용했던 전통시대의 구법전인 『대명률』, 『대전회통』 등과 새롭게 만들어진 신법전인 「감옥규칙」, 「감

제27호(1897.4.2)

57) 『사법품보』 제3책 pp.391-392, 경기재판소 보고서 제52호(1898.10.18)

58) 『사법품보』 제3책 p.278, 삼화향재판소 질품서 제2호(1898.8.31.), 『사법품보』 제1책 p.616, 강원도 관찰사 보고서 제22호(1897.2.19)

59) 『사법품보』 제1책 p.612, 인천항 감리서 보고서(1897.2.12)

옥세칙, 『징역처단례』 등의 내용을 상호 대조 분석하였다. 또 법부와 전라북도재판소간의 지령, 훈령, 보고서 등 공문서와 각 고을별로 남아있는 읍사례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법령의 적용과정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과 의복을 지급해주면서 건강과 위생도 돌보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15세기 『경국대전』부터 19세기 중반 『대전회통』에 이르는 국전(國典)의 「홀수(恤囚)」, 「옥수의량(獄囚衣糧)」과 같은 조선왕조의 법전 규정은 개항 이후 19세기 말까지도 제대로 지켜지는 고을이 드물었다. 이는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준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갑오~광무개혁기에 연좌제가 폐지되고, 각종 개혁정치와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수인(囚人)들에 대한 대대적인 석방(釋放), 보방(保放), 감형(減刑) 조치가 취해졌다. 또 재판속결로 고질적인 체옥(滯獄)이 대대적으로 해소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라북도재판소가 관할하는 전북 각 고을의 수인들과 유배 죄인들에게도 적용되어, 감옥이나 유배지에서 벗어나 수형 이전의 자유로운 삶으로 복귀할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다. 또한 법부가 전라북도재판소에 빈번히 내리는 훈령, 지령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법령에 맞게 수인에게 착용된 형구(刑具, 獄具)를 엄격히 제한하고, 징역종신형이나 유배종신형의 경우 꼼꼼히 재판과정을 계도(啓導)하였다. 그리하여 억울한 재판이나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면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도록 재판제도 전반이 매우 철저히 관리되었다. 무엇보다도 작은 액수이지만 역비(役費, 일한 값)를 받으면서 ‘징역살이’를 하게 된 것은 수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었고, 수인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 점에서 전북지역의 수인들도 근대적 인권신장(人權伸張)의 일정한 혜택을 제한적이거나 누릴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주 감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을 옥[군옥]들이 퇴락하고 무너져서 원래 있던 감옥이 아닌 다른 관아 건물을 임시 감옥으로 사용하는 등 감옥시설 전반에 걸친 노후화와 이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결감과 미결감의 구분이 없거나 그 구분 자체가 무의미했다. 그러므로 서울과 인천 등 일부 개항장의 선진적 감옥시설 정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운동, 독서, 취업준비, 면회시간 보장 등의 사회 복지적 혜택이 전북지역의 감옥에도 제대로 베풀어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이는 근대화의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던 1890년대의 과도기적 시대 특성의 하나인 경향간, 지역간의 시차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고찰 대상 시기가 갑오~광무 초년(1894~1900년)의 대략 6~7년에

불과한 매우 짧은 시기라는 제한된 연구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또한 개항 전후기 이 지역 지식인들의 문집에 나오는 감옥이나 형정 관련 기록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일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 감옥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꼭 수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법전류

『大明律附例』, 『大典會通』, 『六典條例』, 『新舊刑事法規大典』 上, 下 ; 한국법제연구원 편, 『大典會通 研究 -刑典, 工典編-』(1996.11)

2. 재판기록

서울대규장각 영인본 『법부기안』 제1~3권, 『司法稟報』 영인본 제1~5권, 한상권 외 『역주사법품보』 제1~5권

3. 읍지류

서울대규장각 영인본 『읍지』(1983년 영인본, 2권), 『전라도읍지』(2008년 영인, 22권)

4. 고지도류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1996.5)

5. 『승정원일기』 등 관찬연대기

6. 저서

권인호, 『行刑史』, 국민서관, 1973.

김영란, 『열린 법 이야기』, 풀빛, 2019.

백범정신선양회 편, 『백범일지』, 하나미디어, 1992.

법무부 편, 『韓國矯正史』, 1987.

서일교,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박영사, 1974.

심재우,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네 죄를 고하여라-』, 산처럼, 2011.

-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계 -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 원재연, 「서양법의 등장과 구한말 유가 법사상의 변용」, 『韓國儒學思想大系』 VIII 法思想編, 한국국학진흥원, 2008.
- 유영익 편저, 「이승만의 “옥중잡기” 백미(白眉)」, 『젊은날의 이승만』, 연세대출판부, 2002.
- 정공식, 『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2.
-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7. 연구논문

-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1호, 2016, 7-51쪽.
- 도면희,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의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문준영, 「大韓帝國期 刑法大典의 制定과 改正」, 『법사학연구』 제20호, 1999, 31-56쪽.
- 심재우, 「審理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심재우, 「朝鮮後期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運營」, 『규장각』 21, 1998, 83-102쪽.
- 원재연, 「1890년대 호남지역 감옥의 운영실태 일단 - 장성군 수인(囚人) 사망사례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74호, 2016, 283-316쪽.
- 원재연, 「1890년대 후반 유교이념과 위법률(威逼律) : 전북지역의 판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7권 6호, 2016, 627-642쪽.
- 원재연, 「1890년대 후반 지방감옥의 관리 실태 : 전주와 인천 감옥의 체옥개선(滯獄改善)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8권 2호, 2017, 277-293쪽.
- 원재연, 「남한산성의 형옥과 천주교 신자들의 옥살이」, 『교회사학』 창간호, 2004, 227-271쪽.
- 원재연, 「수원 화성의 천주교사적지 재조명 -형옥(刑獄)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제7호, 2010.
- 원재연, 「조선시대 保放의 典據와 그 實態」, 『법사학연구』 제33호, 2006, 5-23쪽.
- 윤용혁,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 『웅진문화』, 공주향토문화연구회, 1991.
- 윤용혁, 「한말의 공주옥에 대하여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에 대한 추고-」, 『

웅진문화』 5, 1992.

이민원 편저, 『백범 김구의 세계관의 변화와 단발 문제: 백범일지를 중심으로』,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5집, 2007.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메카니즘 연구-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이종민, 『일제의 囚人 노동력 운영 실태와 통제 전략 -전시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8, 일지사, 2000, 40-68쪽.

임재표, 『조선시대 인본주의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圓形獄과 恤刑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정진숙, 『1896~1905년 형법체계정비에 관한 연구-刑法大典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55, 2009, 123-205쪽.

조지만, 『朝鮮時代 刑事法으로서의 大明律과 國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홍문기, 『1894년 ‘감옥규칙(監獄規則)’의 성립과 근대 감옥제도의 도입 양상』, 『한국사연구』 185집, 2019, 83-124쪽.

<Abstract>

**The Changes of Jail System and Human Rights in the Period
of Kabo-Kwangmu Reformation
: Focusing on Jeonlabukdo Province**

Won, Jae Yeon*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hanges of Jail system and of treatment of prisoners before and after in the period of Kabo-Kwangmu Reformation, by considering differences between the articles of the new and old codes in the aspect of legal system, and by reviewing the documents such as judicial records, local ethnography and old maps in Jeonlabukdo province. The changes of judicial system in modern Korea is composed of the aggressive inten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patriotic purpose of Enlightened Party. In general it has many similarities of accepting the European jail system between in the Japanese Meiji Reformation and in modern Korea. Especially the acceptance of the penal servitude system was followed by the division of prison between the convicted prisoners' and the unconvicted. And it has brought about the changes such as paying the wages of the convicted and the active self-realization through the prisoner's reading of culture, moral, occupation books and doing regular exercise, and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it was possible that the modern penal and jail system focusing on enlightenment and discipline. It has also led to the change of execution method that the decapitation and dismemberment were replaced by hanging and firing squad. By this change, we are able to know the development of the prisoner's right. In the province of Jeonlabukdo, owing to the often instructions and answering order for the fair trial by Ministry of Justice, it was possible that all the judicial processes had got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according to the new penal system, abolishing the old judicial custom of vague standards. And the new legal system has put the strict restriction on the use of implement of fastening and punishing the prisoners. Very often the government declaimed act of oblivion for the convicted and the unconvicted, for the sake

* researcher in the institute of Incheon Studies Institute

of participating with the national celebration and the reforming politics. The kinds of oblivion was various such as parole, temporal release, reduction of penalty. As a result of these managements, the human right of prisoners in jail has considerably improved in the province of Jeonlabukdo. But in the aspect of advancing the level of penal servitude, it was still lacking and insufficient to give the food and wages for working for prisoners, like any provinces at the period. We can see the transitional character of provincial underdevelopment in the judicial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capital and some advanced open port, in the aspect of facility modernization and of gaining funds in 1890s in Korean empire.

Key Words : Jail, Penal servitude, Facility modernization, Gaining funds, The human right of prisoners